

광주고등법원 2018. 8. 20. 선고 2017누1853 판결

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소]

판결

【전 문】

【원고, 항소인】 원고(개인)

【피고, 피항소인】 바구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
【주 문】

1.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6. 10. 6. 전주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의 종전자산평가액을 94,674,000원으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.

(이전내용 생략)

4. 결론

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(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)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